

2023년 3차 코이카봉사단(159기) 모집안내문

2023. 3. 3.(금)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모집팀

- 차 례 -

1. 모집 개요
2. 전형 절차 및 참여방법 안내
3. 선발 일정
4. 유의사항 **[필독]**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 안내
[붙임2]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안내

1 모집 개요

- 모집 기수 : 일반봉사단(159기)
- 모집 인원 : 000명
- 지원 자격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 단, 전 세계적 팬데믹 지속에 따라, 1959.1.1. ~ 2004.12.31. 이내 출생자
-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파견국이 요청하는 자격 기준(자격, 경력 등)에 해당하는 자
- 기저질환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신체검사 통과 필수)
 -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
- 국내교육입교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 (1963.12.31. 이전 출생자) 2가백신(BA.1, BA.4/5) 접종 완료자
 -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의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으로 접종 가능
 - (1964.1.1. 이후 출생자) 부스터샷(3차) 이상 접종 완료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는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일반여권으로 파견 예정이며, 국내교육 대상자에 한해 상세 안내 예정
- 파견 국가별 적정 활동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 범죄경력 등으로 인한 협력국 출입국 또는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 파견 유형 : 일반파견형
- 파견 시기 : 2023년 7월부터 국별 순차적으로 파견 예정
- 활동 기간 : 1년 (단,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가능)

□ 파견국 : 13개국

구분	국가명
아시아·태평양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피지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중남미	에콰도르
동구·CIS	우즈베키스탄

□ 모집직종 : 5개 분야, 28개 직종

구분	국가명
공공행정	관광
교육	과학교육, 미술교육, 미용교육, 수학교육, 요리, 유아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일반), 체육교육(태권도), 초등교육, 컴퓨터교육(디자인), 컴퓨터교육(일반)
기술·환경에너지	기계, 섬유/의류, 용접, 자동차, 전기/전력, 전자, 환경
농림수산	농업, 수산/어업
보건의료	간호, 물리치료, 보건일반, 영양관리, 임상병리, 작업치료

※ 자세한 활동 내용은 ‘직종별 세부 활동내역’ 및 ‘현장조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조사서

-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 모집선발 ▷ 모집정보 ▷ 기수별 모집정보 확인

② 직종별 세부 활동내역

-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 모집선발 ▷ 모집공지사항 ▷ 159기 모집공고 ▷ 첨부파일 확인

※ 모집국가 및 직종은 협력국과 파견기관의 수요요청사항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3월 10일(금)에 일부 국가 수요에 대해 추가 공고 예정**이며, 전체 모집수요는 협력국 요청에 따라 추후 변동/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종 국가배정은 지원자의 활동전문성, 기지원자의 경우 과거 활동평가, 제재 조치 이력, 협력국의 요청내역을 종합 고려합니다. 소속 기관은 현지 교육 종료 후 확정·안내되며 파견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전형 절차 및 참여방법 안내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전형)	3차 전형	최종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접수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2차 전형 대상자 발표 '23.4.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도검사 면접전형 '23.4.14. ~15.(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검사 신용조회 서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심사 및 국가배정
'23.3.3.(금) ~'23.3.22.(수) 오후 4시까지		3차 전형 대상자 발표	'23.4월 중 실시 예정 (선발일정 참고)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23.5.19.(금)

□ 참여방법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기간 : 필수 제출, 2023. 3. 3.(금) ~ 2023. 3. 22.(수) 오후 4시까지 ※ 기간 내에 지원서를 최종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봉사단 홈페이지(http://kov.koica.go.kr) 로그인 </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메뉴 상단) 모집선발 </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지원서 작성 및 확인 </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2023년 3차 코이카봉사단(159기)' 선택 </div>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지원서 작성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 </div>
	① 별첨된 '지원서 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 kov.koica.go.kr 로그인 → [모집선발] 탭 → [지원서 작성 및 확인] → [지원서 접수확인] 메뉴, 기존 제출한 지원서 열람 가능 ③ 지원서 작성 시 학력, 경력, 자격 등 작성하신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희망국가 및 기관은 총 3지방까지(3개 국가, 3개 기관)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해당 직종의 모집수요가 2개국 이하인 경우, 국가 수만큼 선택 가능

1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전형(서류심사 및 증빙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 직종 적합성(전공, 경력, 자격증 등) 및 지원 자격(연령 등) 결격 사유 여부 점검 - (증빙서류 확인) 지원서 내 학력, 자격, 경력란에 기재 후, 증빙서류 업로드된 사항만 인정
2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전형(적합도검사 → 면접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도검사) 온라인 실시 - (기술면접) 지원 직종에 대한 전문지식 점검 - (일반면접)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 현지적응력 등 소양 평가 * 적합도검사는 면접과 동일한 2차 전형으로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3차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전형(신체검사, 신용조회,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검사)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검 진행 - (신용조회)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 - (서류제출)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온라인 제출
최종심사 및 국가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 결과와 직종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정 및 최종 국내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기타 심사 및 파견 시 고려사항

- 코로나19 이전 봉사활동 중 규정 위반 또는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의, 경고 또는 자격박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거나 활동평가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최종불합격 처리(국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국가별 활동비자 발급 시 개인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파견국가/파견시기 변경 또는 “파견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선발 일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		2023. 3. 3.(금)
모집설명회		2023. 3. 7.(화) 오후 3시 / 온라인
추가수요 공고 예정		2023. 3. 10.(금)
지원서 접수		2023. 3. 3.(금) ~ 2023. 3. 22.(수) 오후 4시
1차 전형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3. 4. 5.(수) 오후 2시
2차 전형	적합도 검사	2023. 4. 6.(목) ~ 2023. 4. 12.(수)
	면접전형	2023. 4. 14~15.(금,토) / 대면면접
신체검사 대상자 발표		2023. 4. 21.(금)
3차 전형	온라인 서류 제출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	2023. 4. 24.(월) ~ 4. 26.(수)
	신용 조회	
	신체검사	2023. 4. 22.(토) ~ 4. 26(수) / 만 50세 미만 2023. 4. 26.(수) ~ 4. 29.(토) / 만 50세 이상 ※ 토요일 오전 검진 포함
	신체검사 재검 (해당자에 한함)	2023. 5. 6.(토) ~ 5. 10.(수) ※ 토요일 오전 검진 포함, 일요일 제외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2023. 5. 19.(금) 오후 2시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작성		2023. 5. 19.(금) ~ 5. 22.(월)
국내교육		2023. 6. 5.(월) ~ 7. 7.(금) / 대면+비대면교육
현장파견		2023. 7월부터 순차적으로 출국

※ 상기 일정은 한국국제협력단 및 협력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4 유의사항(지원 전 반드시 필독)

구 분	세 부 내 용
중복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른 모든 유형의 '코이카봉사단' 및 '코이카자문단'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선발전형 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
코로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고려,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모집하며, 국내교육 입교 전까지 1963. 12. 31. 이전 출생자는 2가백신(BA.1, BA.4/5) 접종 완료, 1964. 1. 1. 이후 출생자는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한 자만 협력국 파견이 가능합니다. - 국내교육 시작 후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의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백신, 스킵코비원백신)으로 접종 가능 <p>※ 증명서 제출 불가 및 거부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지원서 제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또는 크롬에서만 작성 가능합니다. 지원서 작성 관련 문의는 봉사단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신부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과 동거 불가)
신변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는 소속기관과 협의(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퇴직, 휴직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교육부훈령 제98호(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의거,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http://kov.koica.go.kr)에 있는 모집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연수휴직'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시·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p>※ 모집 일정은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 "모집선발" → "모집일정" 클릭 하여 확인 가능(http://kov.koica.go.kr)</p>

<p>일정 조정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 전형부터 국내교육 및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 국내교육 미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됩니다.
<p>신용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용조회를 실시하며, 신용조회 결과 채무불이행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됩니다.
<p>국가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발 시 국가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 전문성과 협력국의 요청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되며, 소속 기관은 현지 교육 종료 후 최종 확정됩니다.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기간은 기본 1년이며, 별도의 협력단 승인을 거쳐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s://alio.go.kr/)에서 '해외봉사단 파견규정' 및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단 지원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연락바랍니다. - 대표메일 : kov1@koica.go.kr - 전 화 : 1588-0434 (내선 1번) - 상담시간 : 평일 9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공휴일 휴무

□ 증빙서류 업로드

(기 간) 2023. 3. 3.(금) ~ 2023. 3. 22.(수) 오후 4시 (지원서 접수와 동시)

(방 법) 지원서 접수 시, 전자문서 형태로 업로드(pdf, jpg, png)

(목 록)

증빙서류	참고
학력 증명서 (고등학교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내 기재한 모든 학력 증명서 업로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단, 해외 학력증빙의 경우, 증빙서류 추가발급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6개월 초과분 인정 ※ 증빙서류 내 기재된 학교명은 블라인드 위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에 학교명, 학과, 성명이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경력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직종 관련 경력증명서(무급 경력 포함) 업로드 ※ 기관 발급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명 및 직인/날인, 경력기간,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면허증 및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 업로드
면허신고서 접수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직종 (각 협회 면허신고센터에서 발급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 단,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200시간 이상으로 인정
병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지원자에 한함

✓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 안내

✓ [붙임2]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안내

[붙임1]

사회적 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업로드 안내

※ **해당자**는 지원서 제출기간 [2023. 3. 3.(금) ~ 2023. 3. 22.(수) 오후 4시] 내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증명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p>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직등록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p>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p>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p> <p>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p>
제 출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 련 법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 출 서 류	<p>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자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p> <p>2. 주민등록등본 1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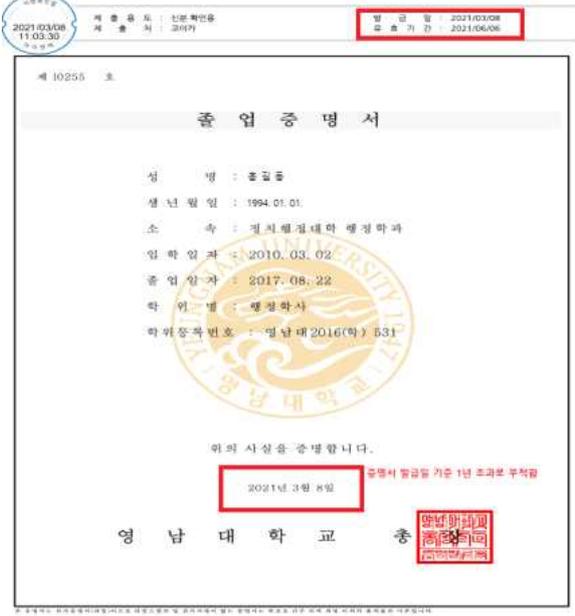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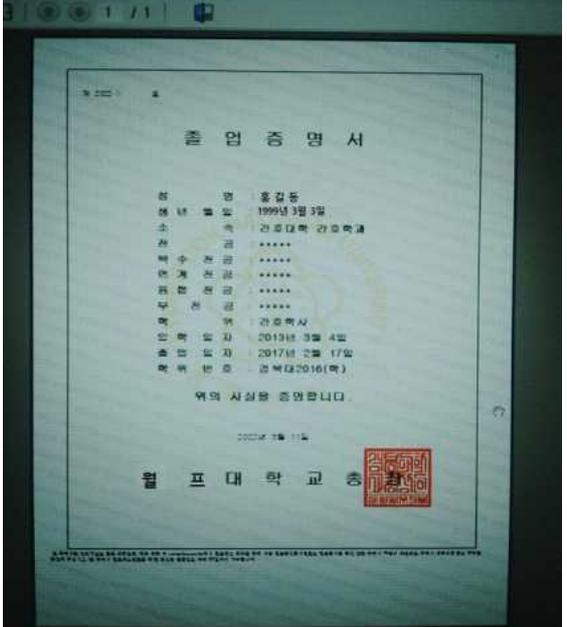
[붙임2]

증빙서류 업로드 시 유의사항 안내

증명서 스캔본 혹은 원본 촬영본(해당 문서 사이즈에 맞추어 촬영)
업로드 시 문서 상 정보가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 잘못된 업로드 예시를 참고하여 증빙서류 부적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업로드 양식 예시 >

<p>a. 해상도가 낮아 식별 불가능한 증명서 (부적합)</p>	<p>b. 학력 증명서(졸업, 졸업예정, 재학증명 등), 경력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발급일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 (부적합)</p>										
											
<p>c. 증명서 아닌 조회 정보 (부적합)</p>	<p>d. 증명서 화면 캡처 (부적합)</p>										
<table border="1" data-bbox="191 1668 805 1780"> <thead> <tr> <th>이름</th> <th>영문명</th> <th>현품단</th> <th>품단번호</th> <th>최종승단일자</th> </tr> </thead> <tbody> <tr> <td>홍길동</td> <td>Gildong Hong</td> <td>2단</td> <td>2158642</td> <td>2020.10.10.</td> </tr> </tbody> </table>	이름	영문명	현품단	품단번호	최종승단일자	홍길동	Gildong Hong	2단	2158642	2020.10.10.	
이름	영문명	현품단	품단번호	최종승단일자							
홍길동	Gildong Hong	2단	2158642	2020.10.10.							